

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구대조표

현 행	개 정
제17조의 2 (학기당 최소이수학점) “신설”	제17조의 2 (학기당 최소이수학점) ②학기당 최소이수학점은 8학점 이상으로 한다. (단, 2013~2016학번까지는 10학점, 2012학번까지는 12학점으로 한다.) ② 4학년 2학기는 학기당 최소이수학점을 6학점으로 한다.
	부칙 1.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